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화재예방법 시행령)



[시행 2022. 12. 1.] [대통령령 제33005호, 2022. 11. 29., 제정]

소방청 (화재예방총괄과 - 총괄) 044-205-7442 소방청 (화재대응조사과 - 화재위험경보, 불시 소방훈련) 044-205-7472 소방청 (생활안전과 -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) 044-205-7662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

- 제2조(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) 소방청장은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- **제3조(기본계획의 내용)** 법 제4조제3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화재발생 현황
 - 2. 소방대상물의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 추세 등 화재예방정책의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
 - 3. 소방시설의 설치 관리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
 - 4. 계절별・시기별・소방대상물별 화재예방대책의 추진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(이하 "시행계획 "이라 한다)을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.
 -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2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세부시행계획의 수립・시행) ①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・광역시 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・도지사"라 한다)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계획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통보해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(이하 "세부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③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세부 집행계획
 - 2. 직전 세부시행계획의 시행 결과
 - 3. 그 밖에 화재안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- 제6조(통계의 작성・관리)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・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소방대상물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2.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4.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(이하 "제조소등"이라 한다) 현황
- 5. 화재발생 이력 및 화재안전조사 등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
- 6.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
- 7.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8. 법 제23조에 따른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에 대한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지원 현황
- 9.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및 선임 관련 지역별 ㆍ 성별 ㆍ 연령별 현황
- 10.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현황 및 그 실시 결과
- 11. 소방시설업자, 소방기술자 및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한자의 지역별·성별·연령별 현황
- 12. 그 밖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소방청장이 작성・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통계를 체계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빅데이터(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 세트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활용하여 화재발생 동향 분석 및 전망 등을 할 수 있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3장 화재안전조사

제7조(화재안전조사의 항목)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(이하 "소방관서장"이라 한다)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.

- 1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
- 2. 법 제24조, 제25조,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- 4. 법 제37조에 따른 소화·통보·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(이하 "소방훈련·교육"이라 한다)에 관한 사항
- 5. 「소방기본법」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
- 6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2조에 따른 시공,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감리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
- 7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8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9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(防火區劃)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
- 10.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에 따른 방염(防炎)에 관한 사항
- 1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
- 12.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8조, 제9조, 제9조의2, 제10조, 제10조의2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1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5조, 제6조, 제14조,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14. 「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4조,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- 15.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8조(화재안전조사의 방법・절차 등)**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1. 종합조사: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
 - 2. 부분조사: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
 -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,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,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(이하 "소방관서"라 한다)의 인터넷 홈페이지나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.
 -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.
 -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・구조・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・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.
 -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.
 - 1.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
 - 2. 「소방기본법」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(이하 "안전원"이라 한다)
 - 3. 「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"기술원"이라 한다)
 - 4. 「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(이하 "화재보험협회"라 한다)
 - 5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(이하 "가스안전공사"라 한다)
 - 6.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(이하 "전기안전공사"라 한다)
 - 7.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
 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 청장이 정한다.
- 제9조(화재안전조사의 연기) ① 법 제8조제4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2. 관계인의 질병, 사고, 장기출장의 경우
 - 3.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, 교육・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・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 (領置)되어 있는 경우
 - 4. 소방대상물의 증축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공사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
 - ②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소방관서장은 법 제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계인에게 미리 알리고 화재안전조사를 할수 있다.
- **제10조(화재안전조사단 편성 · 운영)**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(이하 "조사단"이라 한다)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소방공무원
 - 2.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
 - 3.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1조(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
 - 2. 소방기술사
 - 3. 소방시설관리사
 - 4.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
 - 5.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6. 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」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,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
 -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 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4.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
 - 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 -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**제12조(위원의 제척・기피・회피)**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・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 - 1. 위원,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
 - 가.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 - 나.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, 공사, 감리 또는 자체점검 등을 수행한 경우
 - 다. 해당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- 2.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- 3.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,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
 -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・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- 제13조(위원회 운영 세칙)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- **제14조(손실보상)** ① 법 제15조에 따라 소방청장 또는 시・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(時價)로 보상해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소방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 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(裁決)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15조(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)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제조소등 설치 현황
 - 2.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
 - 3.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
 -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.
 -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,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.
 -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⑤ 소방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·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.

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

- 제16조(화재의 예방조치 등)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"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.
 - 1. 제조소등
 - 2.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
 - 3.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・판매소
 - 4. 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
 - 5. 「총포・도검・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
 -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"란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제17조(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)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옮긴 물건 등(이하 "옮긴물건등"이라 한다)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.
 -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.
 -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. 다만,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·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수 있다.
 -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제3항 본문에 따라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.
- ⑥ 제5항의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.
- 제18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)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.
 - 1. 보일러
 - 2. 난로
 - 3. 건조설비
 - 4. 가스・전기시설
 - 5.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용단 기구
 - 6. 노(爐) 화덕설비
 - 7.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
 -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·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,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·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- **제19조(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)**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"고무류・플라스틱류・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(特殊可燃物)"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.
 -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- 제20조(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)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·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.
 -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.
 - ④ 시·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.
 - 1.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
 - 2. 화재안전조사의 결과
 - 3.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,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(이하 "소방설비등"이라 한다)의 설치(보수, 보강을 포함한다) 명령 현황
 - 4.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
 - 5.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21조(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·기준 등)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(이하 "화재안전영향평가"라 한다)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·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·분석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 - 1.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, 공간,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
- 3.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
- 4.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·절차·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22조(심의회의 구성)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
- 1.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(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
 - 가. 행정안전부・산업통상자원부・보건복지부・고용노동부・국토교통부
 - 나.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
- 2.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
-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"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1. 소방기술사
- 2.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안전원
 - 나. 기술원
 - 다. 화재보험협회
 - 라. 가스안전공사
 - 마. 전기안전공사
- 3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(職)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
-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- 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23조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24조(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)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취약한 자(이하 "화재안전취약자"라 한다)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- 4. 「노인복지법」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- 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- 6.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
-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1.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
- 2.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
- 3. 소방용품의 제공
- 4. 전기・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
- 5.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

- **제25조(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**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(이하 "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라 한다)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 -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.
 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, 그 관리에 관한 권원(權原)을 가진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.
- **제26조(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)**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.
 - 1.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 - 2.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- 제27조(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)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・구조・연면적(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)・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
 - 2.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, 방화시설, 전기시설,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
 - 3.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
 - 4. 소방시설・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・정비계획
 - 5.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,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
 - 6. 방화구획, 제연구획(除煙區劃),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・관리계획
 - 7.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 - 8. 소방훈련・교육에 관한 계획
 - 9.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(화재안전취약 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
 - 10.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1.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
- 12. 위험물의 저장·취급에 관한 사항(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)
- 13.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- 14.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,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
- 15.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·구조·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
-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.
- **제28조(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)**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.
 - 1. 별표 4 제2호가목3)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(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)
 - 2.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 - 3.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 -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 - 1.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,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
 - 2.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
- **제29조(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)** 법 제29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 - 1. 신축・증축・개축・재축・이전・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인 것
 - 2.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가.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
 - 나.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
 - 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
- **제30조(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)** 법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별표 4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별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(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
- **제31조(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)**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 6과 같다.
- 제32조(종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)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망(이하 "종합정보망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종합정보망과 유관 정보시스템의 연계・운영
 - 2.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저장・가공 및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・운영
- **제33조(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)** 법 제3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
 - 1.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
 - 2.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
 - 3.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
- 5.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
- 제34조(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)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,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 다만, 둘 이상의 소유권,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.
 - 1.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: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
 - 2.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(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: 설치된 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·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
 - 3.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: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.
- **제35조(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)**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,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.
- 제36조(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)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(이하 "총괄소방안전관리자"라 한다)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.
- 제37조(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)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(이하 "협의회 "라 한다)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(이하 이 조에서 "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"이라 한다)로 구성한다.
 -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.
 - 1.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・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
 - 3.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·방화시설의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
 -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**제38조(소방훈련 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)** 법 제37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.
 - 1. 별표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 - 2. 별표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
- 제39조(불시 소방훈련·교육의 대상) 법 제3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"이란 소방안전관리대 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 - 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제7호에 따른 의료시설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
- 3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 시설
- 4.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·교육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
- **제40조(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)** 법 제3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」으로 정한다.

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

- **제41조(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)**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"이란 점포가 500개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.
 -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"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.
 - 1. 「전기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)
 - 2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.「도시가스사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
- 제42조(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(이하 "특별관리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·도에 통보해야 한다.
 -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・장기 안전관리정책
 - 2.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점검 진단
 - 3.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
 - 4.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
 - 5.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시·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(이하 "특별관리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 -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2. 시 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⑤ 소방청장 및 시·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, 연령별,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.
- **제43조(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)** 법 제41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"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.
 - 1.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
 - 2.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
 - 3.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
 - 4.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
 - 5. 법 제4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
 - 6. 법 제40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 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7.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
- 8.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 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
- 제44조(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)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「건축법」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(이하 "안전등급"이라 한다)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.
 - 1.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: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
 - 2. 안전등급이 양호 보통인 경우: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
 - 3. 안전등급이 미흡 불량인 경우: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
 -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, 양호, 보통,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,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한다.
- **제45조(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)**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 - 1.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
 - 2.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
 - 3.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 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
- **제46조(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)** 법 제42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 "이란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
제7장 보칙

- **제47조(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)**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
 -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
 - 2.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
 - 3. 관계인의 질병, 사고, 장기출장의 경우
 - 4. 시장・상가・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 령・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(이하 "조치명령등"이라 한다)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
 - 5.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
 -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- 제48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소방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49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소방관서장(제48조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시·도지사(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14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15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7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무
 - 5. 법 제19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
 - 6. 법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사무
 - 7. 법 제24조, 제26조,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,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
 - 8.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・재발급 및 법 제31조에 따른 자격의 정지・취소에 관한 사무
 - 9.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
 - 10.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등에 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・운영에 관한 사무
 - 11.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
 - 12. 법 제42조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및 취소
 - 13. 법 제44조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
 - 14. 법 제45조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무
 - 15.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 - 16.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
- **제50조(규제의 재검토)**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- 1.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: 2022년 12월 1일
 - 2.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: 2022년 12월 1일
 - 3.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선임인원: 2022년 12월 1일
 - 4. 제2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: 2022년 12월 1일
- 제5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
부칙 <제33005호,2022. 11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의 관리기준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라목은 이 영 시행 이후 설치하는 화목 등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부터 적용한다.
- 제3조(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설치된 보일러, 난로, 건조설비,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· 용단기구 및 노·화덕설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1 비고 제4호에 따라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.
- 제4조(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제7조 각 호에 따라 저장・취급되고 있는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별표 3 제2호에 따라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5조(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4 제4호가목 1)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)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 인은 이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 4 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.
- 제6조(화재예방안전진단에 관한 특례)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 진단을 받아야 한다.
 - 1. 제43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: 2023년 12월 31일
 - 2. 제43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: 2024년 12월 31일
 - 3. 제4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: 2025년 12월 31일
 - 4. 제4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: 2026년 12월 31일
- 제7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라 행한 처분・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영의 하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.
- 제8조(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제 3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조의6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은 제10조제 2항에 따라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.
- 제10조(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대통령령 제27810호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7년 1월 28일 당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영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별표 4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.
- 제11조(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기간에는 별표 4 제1호가목3)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되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본다.
- 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다.
 -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9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.
- 제1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- 제1조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"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9조"로 한다.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5조제1항제1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제1항제1호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1호가목"으로 하고, "같은 영 제23조제1항"을 "같은 호 나목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제1항, 제2항,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(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)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1호나목,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)・3)・4)"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1항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4조제1항제1호"로 한다.

제6조 전단 중 "소방서장"을 "소방서장 및 「소방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"으로 한다.

제7조 중 "법 제20조제6항"을 "법 제24조제5항"으로 한다.

제8조 중 "실무 교육(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)"을 "실무교육(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 교육으로 한다)"으로 한다.

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4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1항 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"으로 한다.

③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1조의2제3항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3항"으로 한다.

④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비고 제2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다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그 하위법령
- 라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그 하위법령
- 마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및 그 하위법령

별표 5 비고 제4호 중 "「소방기본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"을 "「소방기본법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과 각 법률의 하위법령"으로 한다.

대통령령 제3256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"「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1호 중 "법 제13조제1항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2의2 제13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제1항"을 "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1호나목"으로 한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별표 2의2 제14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제2항"을 "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2호나목"으로 한다.

별표 2의2 제15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3조제3항"을 "「화재의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3호나목"으로 한다.

별표 2의3 중 "한국소방안전협회"를 "한국소방안전원"으로 한다.

별표 3 제1호가목1)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⑥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"로 한다.

별표 제1호다목1)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6호마목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"로 한다.

별표 4 제2호의 소방 및 가스의 점검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"로 한다.

별표 5의 소방 및 가스의 진단 실시자의 인적 자격 요건란 제4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"로 한다.

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2호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2항"을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4조제1항"으로 한다.

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 4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"으로,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1조"를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4조"로 한다.

⑩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제190호 및 제19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90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

191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

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2 제1호나목1) 중 "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조"를 "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"로, "소방특별조사"를 "화재안전조사"로 한다.

제14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 •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면 종전의 「소방기본법 시행령」,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